

제2조 (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 (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내로 하되, 계약자는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4조 (대출이자납부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이자자가 가산된 보험계약대출금에 의해 부과한다.
- (3)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 (4)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ARS)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5)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며, 회사는 다음 이체일에 재청구 한다.
- (6) 동일 보험계약에서 추가대출시 기대출원금에 대한 전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후 대출금이 지급된다.

제5조 (즉시변제)

-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 8. 1.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 8. 1. 부터 2005. 3. 31. 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 4. 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 계약자는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금급(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지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금급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계약자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한다.

제7조 (주소 등 변경통지)

-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인지세의 부담)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계약자와 회사가 부담한다.

제9조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 (1) 경영인 정기보험은 납입기간 20년 이상인 계약(단 80세 만기 계약은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한하여 신규 또는 추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2)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회사에 초과 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만약 계약자가 (2)의 반환의무를 적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상환 후 해지가 가능하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대출 약정서를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한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

-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② 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되며(변액특별계정 대출은 D+2일 지급), ③ 보험기간 동안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④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⑤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1.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 비용지수) 등을 기준 금리로 사용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율 부분 확인]
- Q2. 대출이용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부분 확인]
- Q3.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 비용부담 부분 확인]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또한, 장기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상이하오니, 해당 조항[즉시변제]의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dblife.com) 또는 콜센터(☎1588-3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의 개요 및 유의사항

대출상품명	보험계약대출	대출기간	대출실행일 ~ 보험계약만기일 (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가능)			
증권번호별 세부내역				
증권번호	가입상품명	금리구분	대출금리(%)	대출금액(원)
Ex) 9812345**	○○중신보험	고정	5.15	50,000,000
1234567**	○○건강보험	연동	3.85	30,000,000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 대출금액과 이자 외에 대출약정 체결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입니다.

■ 인지세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
-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의 신용상태(개인신용평점, 재산상황 등)와 무관하게 고객님의 보유한 보험계약의 적립금 부리이율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가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므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다. 위법계약해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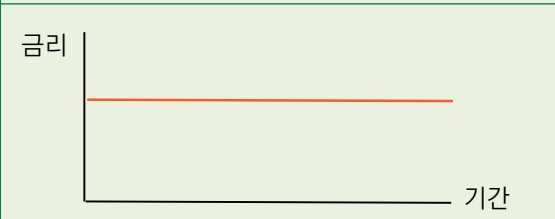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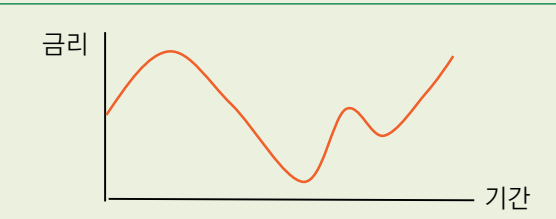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라. 자료 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험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에 따라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금리확정형(고정금리)	금리연동형(변동금리)
운용형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가입시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시
내용	▶ 보험계약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변동주기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대출금리	▶ 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예정이율) + 가산금리(2.0%)	▶ 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 부리이율(공시이율) + 가산금리(1.5%)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 부리아율)와 **가산금리**로 산정됩니다.

보험계약 대출금리	=	기준금리(해지환급금 부리아율)	+	가산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확정형(고정) : 예정이율 ▶ 금리연동형(변동) : 공시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가요소(인건비, 인쇄비, 시스템 유지비용 등) ②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 등) ③ 목표이익률

■ **기준금리**(해지환급금 부리아율)은 보험계약별 해지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리 확정형(고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변동)은 공시이율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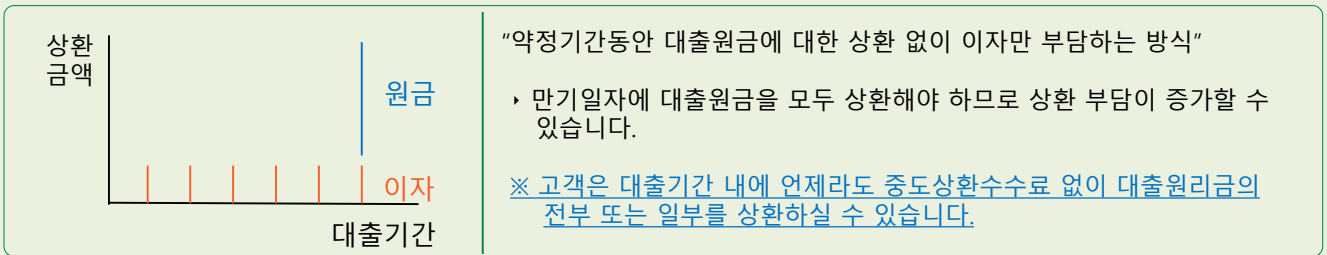
- 예정이율 :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키로 미리 약정한 이율(고정)
- 공시이율 :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 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

■ **가산금리**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요소 : 업무원가(인건비·인쇄비·전산처리비 등),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유동성프리미엄 : 보험계약대출을 위한 예비유동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등
- 목표이익률 :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

5 대출 상환 방법

■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천만원을 5%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만기 일시상환	11,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23회 : 41,666원(이자만 납부) ▶ 24회 : 10,041,666원

◦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부일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합니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이자 가산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계산됩니다.

6 즉시 변제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합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시점*	내 용
① 시점 무관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② '02. 8. 1. 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③ '02. 8. 1. ~ '05. 3. 31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④ '05. 4. 1. 후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해당시점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 기준

- 상기 ②~③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납입최고(독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축)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

7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까지입니다.
-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계약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8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권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 여부 확인

☞ 아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의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p> <p>보험회사로부터 위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②	<p>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어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보험회사로부터 위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③	<p>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보험회사로부터 위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설명을 이해했다면 하단에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DB생명보험과 보험계약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계 약 자: _____ 서명(인)

법정대리인1: _____ 서명(인)

법정대리인2: _____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DB생명 콜센터(☎1588-3131) 또는 DB생명 홈페이지(www.idb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본인은(이하 '계약자'라 한다) DB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약정 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 * 대출개시일부터 보험계약만기일 까지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이내 (추후 변동가능) * 주계약 및 일부 적립형 특약 해지환급금 합계(제세금 공제)에서 회사가 정한 비율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보험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율은 대출대상 보험계약에 따라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 - <u>금리고정형</u> : 예정이율(미변동)+가산금리 - <u>금리연동형</u> : 공시이율(매월변동) +가산금리 * 보험계약대출 금리(기준금리 또는 가산금리)변동시에 회사에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드립니다.
이자납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u>**</u> 일 (매월 대출해당일) * 이자납부시기는 이자미납시 원금에 가산되는 기준이 되는 날로 이자자동이체 청구일과는 다릅니다.
이자미납시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미납시 해당이자를 매월 <u>**</u> 일 원금에 가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가산된 원금을 기준으로 다음이자를 부과합니다.

계약별 세부 내역

보험계약정보		이자율(%)				대출금액(원)	대출개시일
증권번호	상품명	금리구분	해지환급금 부리이율(A)	가산금리 (B)	적용금리 (A+B)		
Ex) 9812345**	○○중신보험	고정	3.15	2.00	5.15	50,000,000	21.1.21
1234567**	○○건강보험	연동	2.35	1.50	3.85	30,000,000	21.1.21

※ **즉시변제** 및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2조부터 제8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의 대출개시일, 이자납부시기, 이자미납시 처리기준일은 표기된 날로부터 +2영업일(토,일,휴일제외)후 입니다.

■ 본인은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계약자: _____ 서명(인)	법정대리인1: _____ 서명(인)
	법정대리인2: _____ 서명(인)

※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의 콜센터(☎1588-3131)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idblife.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 여부 확인

☞ 아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의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위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어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위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위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설명을 이해했다면 하단에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DB생명보험과 보험계약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계 약 자: _____ 서명(인)

법정대리인1: _____ 서명(인)

법정대리인2: _____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DB생명 콜센터(☎1588-3131) 또는 DB생명 홈페이지(www.idb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